

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아래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11일

양산시의회의장

1. 자치법규명

연 번	안 건 명	발의자
1	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	박일배 의원 대표발의
2	양산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최복춘 의원 대표발의
3	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	강태영 의원
4	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	최순희 의원
5	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	김판조 의원
6	양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	곽종포 의원
7	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	곽종포 의원 대표발의
8	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	신재향 의원
9	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김판조 의원
10	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곽종포 의원 대표발의

2. 개정이유 : 붙임 참고 바람

3. 주요내용 : 붙임 참고 바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편번호 : 50624
※ 주소 : 양산시 중앙로 39 (의회사무국)
※ 전화 : 392-8622, 팩스 : 392-861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